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나301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피항소인 C

변 론 종결 2017. 6. 14.

판결 선고 2017. 6. 2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단513859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23,171,20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3,171,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 1) 원고는 2014. 8. 1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2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7. 18.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 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 2)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우리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8. 18. A에 경기도 육성자금지원금 2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 4) A은 2016. 2. 19.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5) 원고는 2016. 6. 1. A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그때까지의 위 대출금의 원금 및이자 합계 20,640,631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36,7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
- 6) 이에 따라 원고가 A에 대하여 보유한 구상금 채권은 위 대위변제 원금 잔액 20,603,891원(= 20,640,631원 - 36,740원)과 위와 같이 회수한 36,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2원(= 36,740원 × 연 12% × 1/366일, 원 미만 버림)이다.
- 7)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A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자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등

B은 2015. 8. 18. 제수1)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9. 4. 접수 제1654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정확하게는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말하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칭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와 A, 원고와 B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A과 B이 2016. 2. 19.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갑 제11, 1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시가감정 결과, 제1심의 국민은행 양주테크노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5. 8. 18.경 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 G)의예금 1,260,042원 합계 111,260,042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2015. 8. 18. 무렵 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구상금 채무 20,603,000원, 남지농협에 대한 채무 8,000,000원, E에 대한 채무 20,715,000원,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275,000원, 불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2013. 7. 11.자 대출금 채무 2,583,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57,166,678원 등 합계 111,342,678원 상당에 이르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거나 적어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나아가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채무초과 여부 등재산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중 약 6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시세는 11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B의 국민은행에 대한 원금57,166,678원 상당의 대출금을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77,000,000원을 대출받아 변제한 점, ③ 피고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갑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① 피고는 B의 제수로서 가까운 친인척이다.

② 피고는 2015. 4. 3.경 B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8. 18.보다 약 4개월 이상 앞선 시점에 미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피고는 위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을가 제9호증(을가제2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융거래내역은 2015. 4. 3.경 B의 친모인 H이 아들인B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돈을 마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가 제1호증)에는 매매대금은 2015. 9. 4.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대금지급에 관한 주장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⑤ 피고가 자신의 아들, 딸과 함께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져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라.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갑 제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5. 9. 4.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7,224,001원(= 원금 57,166,678원 + 이자 57,323원)을 변제한 후 이를 말소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위 1. 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위변제 원금 잔액 20,603,891원과 회수한 36,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2원 합계 20,603,903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 원금 잔액 20,603,891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6. 6. 1.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7. 6.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567,301원(= 20,603,891원 × 연 12% × 379/365) 합계 23,171,204원(= 20,603,903원 + 2,567,30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마쳐져 있던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10,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은 52,775,999원(= 110,000,000원 - 57,224,001원)이며, 이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3,171,204원을 넘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3,171,2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3,171,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백경현, 판사 김효정

별 지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동두천시 [] 아파트 제104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지1층 439.410㎡, 1층 443.559㎡, 2층 내지 4층 각 439.833㎡
 5층 내지 15층 각 431.22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8층 제802호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59.9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동두천시 [] 대 11735㎡

2. 경기도 동두천시 [] 대 204㎡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 1. 소유권대지권 11939분의 45.2654

2. 소유권대지권 11939분의 45.2654 끝.

1) 피고는 B의 친동생인 F의 아내이다.